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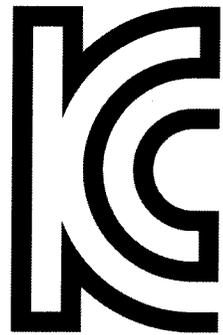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대폭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개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량 주문 생산한 경우에는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4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 안전인증 :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후 시중 유통하며, 매년 1회 정기검사 실시



주요내용

- 품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설치

※ 부실인증신고센터 : 부실인증 신고의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센터 홍보 등 수행

① 제3국 등 공장심사가 곤란 하거나, 연간 1~2회 소량 생산 또는 수입 시에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품목검사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 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품목검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공장 출고물량 또는 수입 통관물량 마다 제품검사 후 적합할 경우 검사물량에 대해 인증 부여

③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연 1회 2년 1회)

○ 안전인증제품은 업체 스스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주기를 완화

〈사례 1〉

주방용기를 생산하는 A씨는 5개 모델의 압력솥을 인증 받아 판매점에 납품하고 있으나, 매년 5개 모델의 정기검사 비용으로 약 5~6백만원이 지출됨에 따른 비용부담을 느껴왔고, 또한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려면 안전인증 비용이 2~3백만원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부담도 매우 높았다.

☞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수요조사를 위한 소량생산은 안전인증 대신에 품목검사로 대체함에 따라 비용(약 4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④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의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 등 현행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국내외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상품화를 지원

〈사례 2〉

합성세제로 인한 주부들의 피부 알러지 발생이 많다는 보도 등을 접한 B씨는 평소 관심이 많은 천연 소재로 소비자의 위해성은 적으나 세탁효과는 높은 합성세제를 개발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개발한 제품은 기존의 안전기준(중성, 약 알칼리)에 없는 약산성제품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안전기준 마련(3개월 이상)까지 대기함에 따라 업계의 애로점으로 지정되어 왔음

☞ 앞으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디자인 제품은 국내외 유사기준을 준용하여 자율안전신고 필증을 부여하는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의 도입으로 신속한 상품화가 가능



- ⑤ 기업의 수출 확대와 안전성 평가비용 감소를 위하여 자율안전확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간의 상호인정 근거 신설

〈사례 3〉

원구를 생산하는 C사는 국내 유통 및 수출을 함께하고 있으나, 국내 검사기관을 통하여 받은 제품검사 성적서가 외국의 수출제품에 적용되지 못하여 수입국의 요구기준에 따라 다시 검사함으로써 시간의 지연과 검사비용이 발생

☞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인정 활성화로 수출제품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비용 감소가 기대

- ⑥ 자율안전확인인 신고제품에 대한 유효기간(5년)을 신설
-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최초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후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하나, 기업의 태만으로 제품의 안전성 유지가 되지 않거나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
 - ※ 현재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원자재의 변경, 안전기준의 강화, 파생모델의 생산 및 수입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반영하여 관리하는 확인절차가 없음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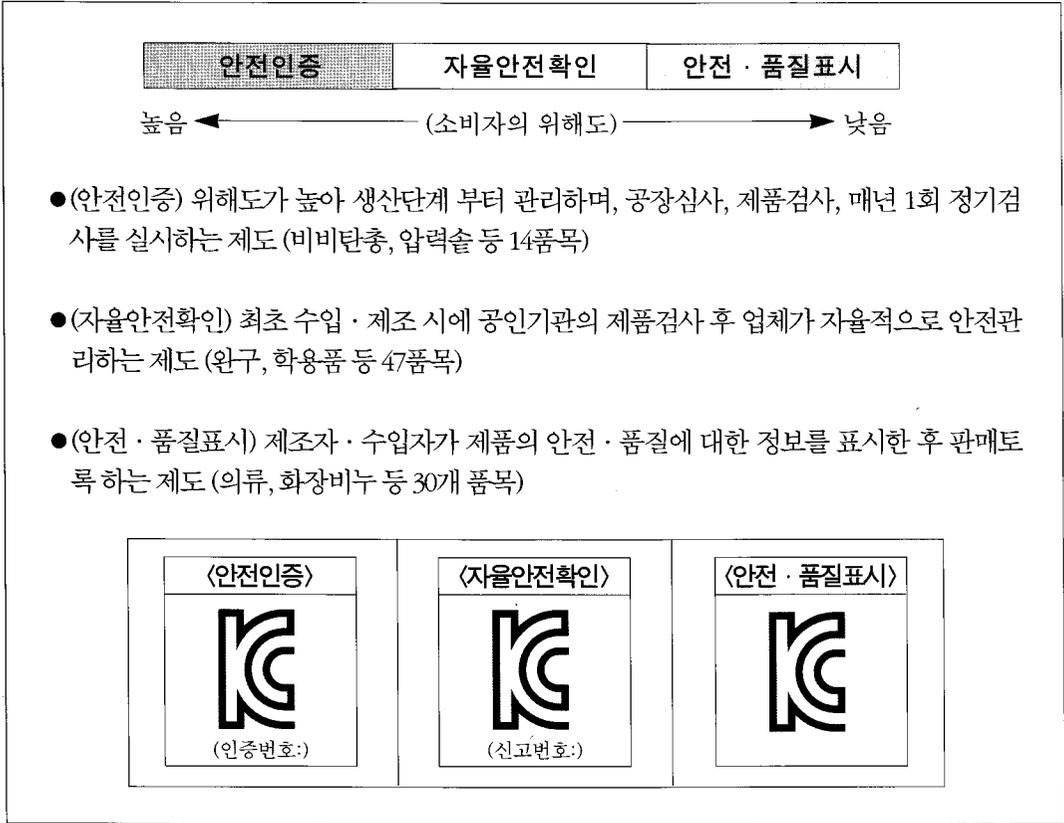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상기의 품공법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또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대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 품목검사 : $500(\text{연간 인증신청 업체수}) \times 30\%(\text{품목검사 비율}) \times 150\text{만원}(\text{공장심사비}) = 2.3\text{억원}$
- 정기검사 완화 : $6,596\text{개}(\text{인증모델수}) \times 1/2(\text{검사완화}) \times 200\text{만원}(\text{검사비용}) = 66\text{억원}$
- ※ 기타 신기술 제품의 시간단축, 제품의 시장방지,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등 행정행위의 실질적인 정비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및 현황

■ 안전관리 개요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신고 현황

('07. 3 ~ '09. 12)

품 목 명	업체수			모델수			비 고
	국내제조	수입	계	국내제조	수입	계	
안전인증(14품목)	643	331	974	3,815	2,781	6,596	
자율안전확인(47품목)	2,762	3,872	6,634	6,634	14,056	20,317	